

의안번호	제 7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7. 3. . (제 회)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출자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7. 3. 7 .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7

제출일자 : 1997. 3. 7.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농촌지도소를 둠.(안 제1조)

나. 지도소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함.

(안 제3조)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에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기술지도
3. 농촌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조(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5조(공무원) 지도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